



# 민유림작업단 교육훈련을 마치고

박 승 수 / 임업기계훈련원

## 1. 교육훈련배경

산림조합에서 운영할 민유림작업단교육훈련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우리훈련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교육훈련은 전국 20개작업단 293명이(계획300명) 매회1주일씩 1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7회에 걸쳐 산림작업기초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1주간의 산림조합민유림작업단 담당직원 23명에 대한 교육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교육훈련기간중에 많은 강설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교육훈련과정을 무리없이 마칠수 있었던 것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작업단과 산림조합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산림작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작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1주일간의 교육훈련과정으로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겠으나 작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합리적인 산림작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적극적인 노동력 확보대책으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산림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는 농산촌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이 분야가 농산촌인구를 흡수 하므로

서 산림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격감(激減)되는 추세에 있고 노령화(老令化)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청·장년의 유능한 숙련 노동력 확보는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산림작업은 매우 열악(劣惡)한 작업환경조건과 저임금등의 취약성까지 겹치고 있어서 산림작업을 기피하고 있고 직업으로서 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Ⅱ령급이하로 숲의 질(質)을 향상시켜야 하는 산림보육작업시기로서 기술과 기능을 겸비한 유능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의 숲은 많은 고용잠재능력(雇用潛在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림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무관리(勞務管理)와 보호대책을 강구한다면 국민경제적 차원의 고용효과는 물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농(離農)현상의 억제와 농산촌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민유림작업단을 확대 육성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술과 기능을 겸비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한다면 합리적인 산림작업은 물론 농·산촌 경제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도 한 몫을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민유림작업단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고용관계유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중 일감제공과 소득이 타분야 산업체 근로자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아야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 2. 민유림작업단의 인적자원

경제활동에 있어서 조직의 인적자원은 항상 자산인 동시에 부채(負債)라고 한다. 그 조직이 유능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되겠지만 무능한 노동력을 안고 있을 때는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의 개별적 차원의 구성원인 인적자원을 어떻게 자산화 시키고 유능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느냐의 과제 해결은 곧 교육훈련일 것이다.

이번에 산림작업 기초과정 교육훈련에 참여한 민유림작업단의 인적자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작업단원의 연령분포는 51세 이상이 32.8%나 되고 있어서 앞에서 언급 한바와 같이 농·산촌노동력이 노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학력은 고졸이상이 15%나 되고 있으므로 이 고졸이상의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계정비와 기계작업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 민유림작업단의 유능한 기간작업원(基幹作業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원 한사람의 부양가족수는 3-5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산촌의 작업원 한사람이 농촌을 떠날 경우 부양가족과 함께 도시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작업단 가입동기, 산림작업경험 정도와 작업중 생계유지수단, 월평균 산림작업소득 기대치등에 대하여 124명을 상대로 설문 한바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단 가입동기는?

① 산조권유 59%(73명)

가) 연령

계	20세 이하	20-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0세이상
293명	2	5	35	39	35	43	38	52	28	16
100%	0.7	1.7	11.9	13.3	11.9	14.7	13.0	17.7	9.5	5.6

나) 학력

계	국	국졸	중졸	고졸
293명	38	131	80	44
100%	12.9	44.8	27.3	15.0

다) 부양가족수

계	0名	1	2	3	4	5	6	7	8
293명	0名	1	2	78	73	43	12	3	1
100%	4.7	7.1	17.	26.6	24.9	14.7	4.1	1.0	0.4



- ② 스스로 30% (37 ")
- ③ 기 타 11% (14 ")

나) 산림작업경험과 작업종은?

- 경험 ① 없다 10% (13명)
- ② 1~2년 35% (44%)
  - ③ 3~4년 23% (28명)
  - ④ 5년이상 32% (39 ")

- 작업종 ① 주로조림 18% (20명)
- ② 주로벌채 7% ( 8 ")
  - ③ 주로육림 8% ( 9 ")
  - ④ 모든산림작업 67% (74 ")

다) 생계유지수단은?

- ① 주로 농사 35% (43명)
- ② 주로 막일 16% (20 ")
- ③ 주로 농사와막일 21% (26 ")
- ④ 주로산림작업 29% (36명)

라) 월평균산림작업소득은?

- ① 30만원정도 11% (13명)
- ② 40 " 23% (29 ")
- ③ 50 " 40% (50 ")
- ④ 50만원 이상 26% (32 ")

마) 교육훈련성과는?

- ① 유익했다 54% (66명)
- ② 그저 그렇다 7% ( 9 ")
- ③ 배울것이 없다 3% ( 4 ")
- ④ 기간이 너무짧다 36% (45 ")

설문에서 생계유지단이 주로 산림작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나 되고 있어서 겸업작업단과 주업작업단으로 구분편성 운영하는 것이 노무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농산촌의 인적자원 상태로 볼때 작업단 구성에 있어서 청장년의 젊은 노동력만으로 작업단을 조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산촌의 젊은 노동력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산림노동에 대한 직업의식과 매

력을 가질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무관리를 통하여 신분과 소득을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노동력의 양질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의 노동력으로는 재래적(在來的) 산림작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산림작업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훈련되고 숙련된 전문적인 기능인력이 있어야함은 두말할나위도 없다.

### 3. 문제점과 대책

가. 작업단교육훈련

작업단의 연령과 학력등이 다양 한데다가 교육훈련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를 곧바로 측정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성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으나 교육훈련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가 있었다.

첫째는 교육대상자중 60세이상의 고령자와 무학자(국어의 해독 능력은 있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내용의 이해와 습득이 매우 더디고 참여 의욕도 뒤진 편이었다.

그러므로 이 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원의 현장 교육과 순회훈련교육을 통한 보충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고졸이상의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기계정비와 기계작업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인적자원수준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는 작업단원의 생계유지수단이 산림작업과 농사를 겸한 사람과 농사없이 산림작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작업단에 함께 조직되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것 이므로 작업단 편성시 이를 구분하고 주거



지역별로 편성하는 것이 노무관리측면과 인화단결측면에서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세째는 산림작업소득이 월평균40만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고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는 교육훈련기간이 너무 짧아 1주일 간에 기본적인 산림작업기초과정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기본교육기간은 최소한 2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순회훈련과 지도원의 현장교육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작업단원중에 기계정비와 기계작업능력을 갖춘자가 없다.

그러므로 작업단별로 2-3인을 선발, 기계과정 교육훈련을 별도로 이수토록하여 작업단 자체적으로 기계정비와 기계작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작업단원중에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과 상습음주자가 참여하여 교육훈련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작업단 운영상에도 문제가 될 것이므로 작업단원 선발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작업단운영

산림조합직원의 교육훈련대상자는 작업단운영과 산림작업의 최일선 담당자 들이 있다.

이들을 통한 민유림작업단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일선 담당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 하였다.

##### 1) 유능한 청·장년의 노동력확보

청·장년의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중작업물량의 제공과 소득의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현실노임에 상응하는 산림작업 소득이 없는한 기존의 노

동력도 목상이 고임금으로 고용하거나 기타의 업종으로 이직 또는 도시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업단조직에 있어서 농·산촌의 노동력현실을 감안하며 1개작업단에 56세 이상의 고령자가 3명이상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연중작업물량확보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물량중에서 산림과 관련된 사업은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산림조합에 우선 배정조치토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고 산림시책에 산림조합 민유림 작업단 작업물량명시가 있어야 하며 계절적 시한 사업으로 집중된 작업물량을 연중사업이 가능하도록 안배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간벌, 태벌, 천연림보육 등은 동절기에도 시행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임금지급방법과 고용제도

연중 작업물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월급제고용을 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월급제 고용 또는 도급제등 기타의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산림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운 것이다.

##### 4) 부채산주및 영세산주부담사업비

영세산주는 사업비 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채산주의 사업비 부과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업시기가 도래된 산림에 대해서는 山主의 동의 없이도 전액 지방비나 국비로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작업단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는 산림개발기



금을 우선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작업단 인원수와 교육훈련

현행 작업단 인원수가 1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으로 하향 조정하여 노동능률을 극대화 하고 작업단장은 산림작업을 총괄 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별도의 작업단장 교육훈련과정을 설정하고 이를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대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장비를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국비 또는 지방비로 전액지원하고 작업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수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 4. 맺는 말

우리는 1·2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으나 전문적인 산림노동의 직업근로자를 양성하지는 못하였고 산림노동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의 숲의 질을 향

상시켜 산림을 자원화 해야할 욕망시기가 도래되어 많은 고용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고임금시대가 되어 농산촌의 많은 노동력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찾아 도시로 이주 유입 되므로서 농산촌의 노동력은 격감되는 추세이고 노령화되어 과거와 같이 산림작업에 값싼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농산촌은 공동화 현상을 빚게 될 것이고 산림작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산림작업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림작업의 기계화를 앞당겨야 하고 산림노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무관리를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산림이 국민경제적 고용장의 기능을 다할때 산림정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 것이며 산림노동도 직업으로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21세기의 산림경영합리화와 산지자원화는 물론 산림노동의 기계화와 합리화를 위하여도 민유림 작업단의 확충과 교육훈련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 〈회원만 보세요〉

회비는 10월까지 모두 납입하여 주세요.

###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 031-01-231375

한국독립기협회

○국민은행 : 827-01-0037-647

권 오 진